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자국민의 안전보호가 세계적 추세

글 · 이만찬 전기사무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

돌이켜 보면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화재 및 장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1974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공포 시행된지 이제 4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사업은 1974년 법 제정 이전에도 전기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73년 공업진흥청의 발족과 그 다음해인 1974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회고해 보건대, 1974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정 당시만 해도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수는 극히 미미한데다, 품질수준도 조악하여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누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이 매우 컸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전기용품 제조업이 국내 성장의 주산업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전기공업국에 오르게 되었음은 실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와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실로 격세지감이 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사업은 안전한 전기용품만이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가 가능하여 유통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 위해의 우려가 높은 전기용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제품의 안전인증,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의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주요업무로 하여 진행해 왔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용품의 안전도 제고와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공업진흥청에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 왔고 불법·불량전기용품의 제조 및 수입과 유통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또한 '220V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용요령'과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도 운용요령'을 제정해서 운용하여 전기용품의 효율향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가시책에도 적극 동참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교역 환경은 WTO체제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가입, 암울한 IMF관리하의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 이후 수입선 단변화 품목의 완전폐지로 국제화와 개방화로 치닫는 국경없는 한지붕 밑에서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전기용품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과 고부가가치 상품만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국내외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1980년 후반기 당시 공업진흥청에서는 이러한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에 기꺼이 부응하여, 1989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

여 외국전기용품 제조업체에서도 제조업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바 있다. 앞으로도 전기용품 기술수준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 IEC65제도에 의한 시험기관간 상호인증(MRA)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는 “가격의 중국과 기술의 일본”이라는 두 철벽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바야흐로 정성과 의욕을 경주하여 우리의 전기용품 품질을 높여야 할 때다.

회고해 보면 과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정이래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보아왔지만, 아직도 세계적인 시대조류에 동참하여 완벽하게 합류하지 못한 것이 불행하게도 사실이었다.

금년 지난 7월 1일자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대폭 수정·개정하여 여태까지 숙제로 남아 있던,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장해 관련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안전인증하던 것을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토록 한 것이다. 완전 민간자율시대로 변모한 것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을 과거의 형식승인별 인증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모델별로 인증하여, 그동안 전 세계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숙원이던 상호인정체제로 한발 자국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리고 수입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국내 수입판매업자와 외국제조업체에 병행했던 것을 외국제조업체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주도록 하여 세계적인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일대 조정하였다.

또 TV 등 172개 품목은 강제인증으로 정해놓고 그 외 60V이상 1000V이하 전기용품은 임의인증으로 정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품목 외 기타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전보다 선진화되고 진일보된 방향으로 제조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용품은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문명의 이기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전기용품 소비자를 위해 별칙도 강화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부적합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한 자는 1000만원의 벌금을, 그리고 허위보고에 대하여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게 상향 조정되어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 역시 품질이 기준이하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 노력함으로써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 이전에 과거의 법에 의해 취득한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구법에 의해서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1종 전기용품은 그 잔여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전기용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폭넓은 배려를 하였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가 일층 정비되고 강화되었지만 급속한 소비생활의 향상과 과학 및 기술의 진보로 널리 가전제품이 보급되고 신제품 출현이 증대되면서 세계각국이 전기제품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기술기준이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 잠시라도 멈추지 말고 우리도 일층 강화된 안전관리제도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급변하는 국제시세에 맞고 소비자의 욕구(needs)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조물책임법(PL)에 대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와 대응준비가 요청되고 있다.